

# 건설폐재 재활용 실태와 정책 방향

신충식 / 환경부 사무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율이 낮고 대부분이 단순매립되고 있어 어렵게 마련된 매립장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

## [1] 건설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1] 추진배경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 : 93년 3,867톤/일 -> 94년 11,840톤/일(306.2% 증가)

그러나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율(94년 8%)이 낮고 대부분이 단순매립되고 있어 어렵게 마련된 매립장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

93년 5월 난지도 매립종료시까지 매립된 폐기물중 50% 이상이 건설폐기물이며 94년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1,167만톤 중 33.2%인 387만톤이 건설폐기물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운송비 및 매립장 반입비(15t 트럭당 22만원)등을 줄이기 위해 수집·운반업체가 도시외곽 농지나 녹지에 불법 투기하므로써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무단투기등에 대한 관리감독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 제도상 입지마련이 어렵고 유인책도 적어 관계법령 보완의 지원·육성 노력이 시급하다.

### 2]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

#### (1) 발생현황

건설폐기물 배출원인 공사현장이 고정적이지 않고 공사규모에 따라 배출규모가 다양함에 따라 정확한 발생량 파악이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4년도 432만톤(토사제외)이다.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업체(196개사)의 94년 건설폐기물발생량은 1,723만톤(토사류 포함)이었다.

**(2) 처리실태**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은 매립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매립지 반입절차,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처리등)에 의해 신고된 94년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발생량 중 매립 91%, 재활용은 8%에 불과하다.

건축폐기물에는 폐목재, 폐비닐, 폐지, 폐유리 등 각종 일반폐기물이 함께 배출되고 있어 분리, 파쇄, 소각 등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재활용 대책**

**(1) 건설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입지 허용 확대**

보존녹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다목)하다.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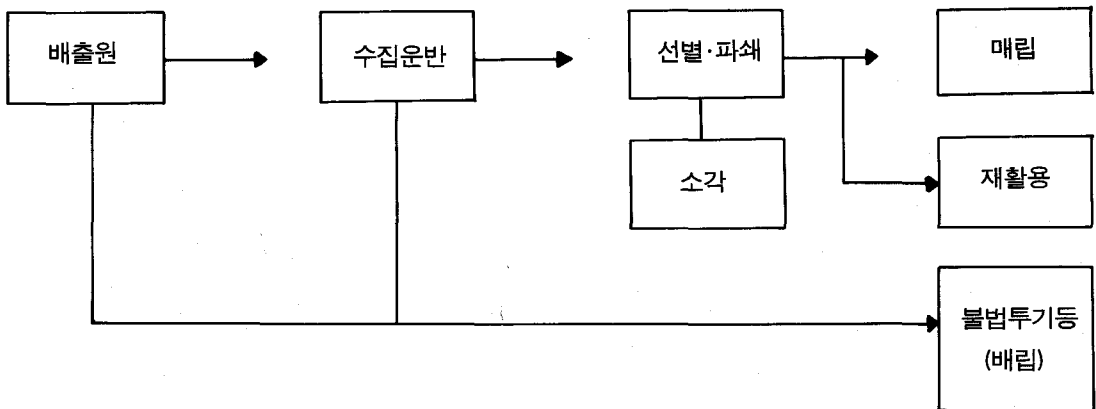
의 폐기물처리와 재활용 시설 설치를 허용(개발제한 구역관리 규정 제5조의 6)하였다.

제5조의 6(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규칙 제7조 제1항제3호 가목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시설인 진애 및 오물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건설폐재 중간처리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등 건설폐재를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하며 도시계획으로 설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설치후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나대지·잡종지·공장용지등 이미 대지화된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당 3개소 이내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중간처리·재활용업체를 현지 근린공장 대상에 포함한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별표1, 3. 기타지역 가호(2) :



〈처리·재활용 체계도〉

'95.12.7)

③기타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와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정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동법 제 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 의류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출판업을 영위하는 공장

(2) 재활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재활용자재의 품질에 대한 시방기준 마련

발주자의 책임강화 및 재활용의무 대상업체 확대(발주자책임강화를 위한 건설폐재재활용지침 개정('95.11.17))

재활용의무 대상업체 확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96상반기중 250억원 → 200억원)

(3)무단투기방지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관리개선

일정면적당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종류에 대한 산정기준 마련(건설폐기물 재활용가

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  
용역 완료)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시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건설폐기물 무단투기·불법 처리에 대한 벌칙 강화 :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건설폐기물 관련 법적사항

1] 개정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1) 폐기물의 분류

(법 제2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폐기물을 1회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의 투기금지

(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항만·어항·하수도·하천·도로·호수·산림,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법 제24조9, 시행규칙 제10조)

건설업자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정한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예정일 7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법 제25조)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받

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건설폐기물배출사업자의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

(환경부고시 제96-96.2.)

### (1) 목적

건설폐기물의 발생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이다.

### (2) 주요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3) 기본방향

- 발생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성상별로 분리배출 및 보관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 적극 추진

- 기타 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 또는 위탁처리(자가처리)

### (4) 용어정의

건설폐기물: 건축(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블럭류, 폐벽돌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오니 등을 포함한다.

공사과정에서 함께 배출되고 있는 폐유리, 폐목재, 폐금속류, 폐종이, 폐합성수지류, 폐페인트, 폐유 등 폐기물은 성상별로 별도처리 또는 재활용(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유제찌꺼기, 중장비·차량의 폐유 등은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된다)

### (5)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구분체계

다음 페이지 [도표 참조]

### (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을 배출예정일(공사 시행일) 7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 (7)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한다.

현장에서 분리·배출이 용이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분리·선별작업 및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권장한다.

### (8)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 한다.

① 스스로 수집·운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관할 시·군·구에 운반차량등록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한다.

② 기타 폐기물(건설폐기물 이외)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한다.

### ③ 수집·운반업자 위탁처리

- 수집·운반업자의 영역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의 처리등록차량 또는 운반차량등록 여부

- 중간처리업소 등 수집·운반장소 및 방법 적정여부(중간처리·최종처리업소·재생처리장소)

### (9)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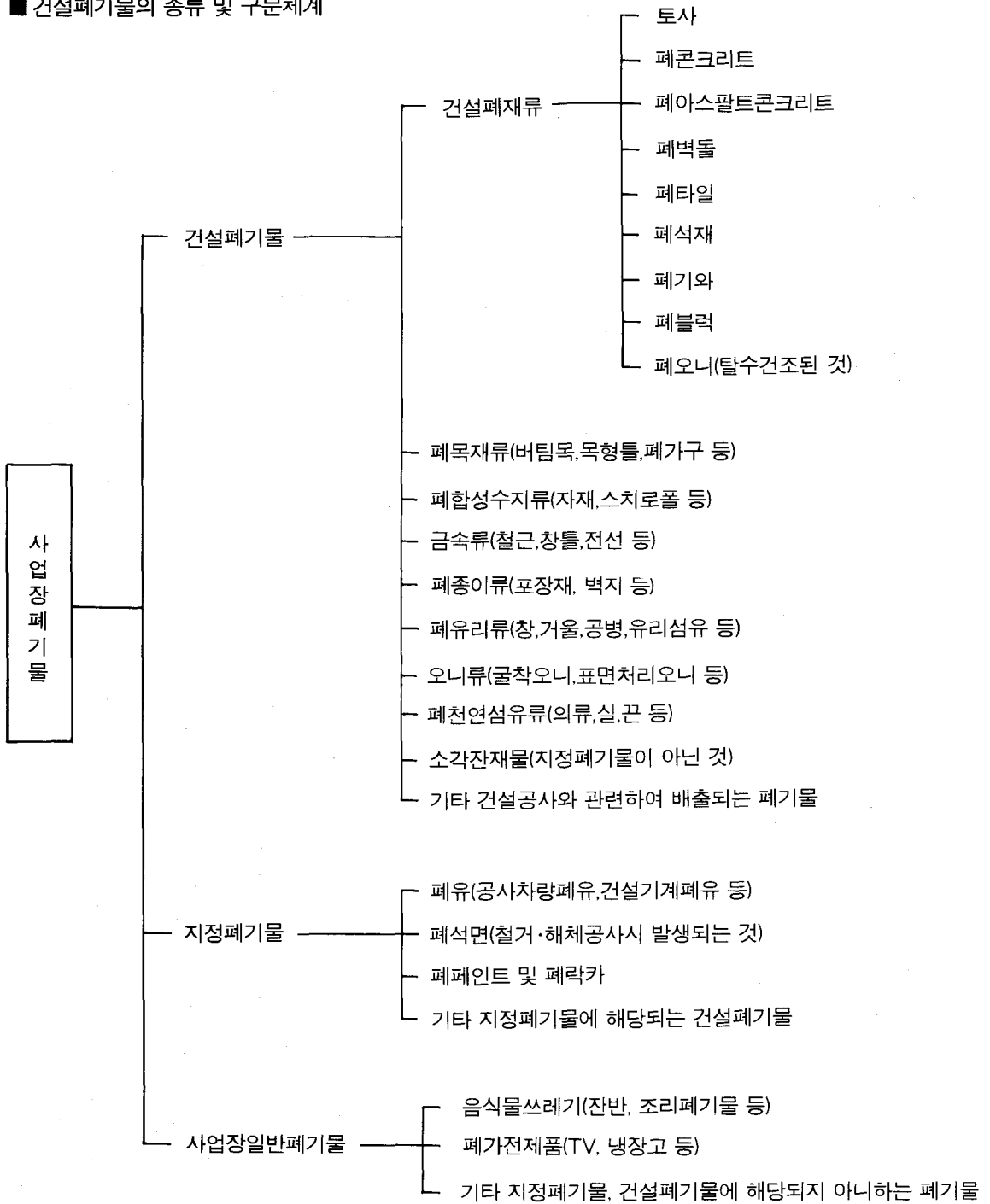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① 집하·적환·분리·선별처리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 ②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철

■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구분체계



근,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은 재활용되도록 판매 또는 재활용한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③ 파쇄처리

- 분리·선별작업을 거친 후 건설폐기물 중 덩어리 규모가 크거나 일정하기 않은 경우는 파쇄한다.

- 파쇄규격은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한다.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하되 가급적 최대 20cm이하로 균일하게 파쇄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기반조성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

④ 소각처리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폐지 등)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만 소각(건설폐재류에 혼입 매립 등 금지)

⑤ 매립처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한 것에 한한다.

(10) 재활용

성토재·복토재·기반조성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 한다.

① 건설폐재류를 상기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공사시행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각종 인·허가·신고 등 공사관련 서류
- 토지소유자 동의서
- 파쇄처리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원인업자(생산업체)로 하여금 재활용의무

규정

석탄재, 철강슬래그, 건설폐재발생 사업자로 하여금 재활용목표를 의무화

(2) 재활용산업의 육성발전

금융세계 등의 지원('96 : 폐기물관리기금 300억원)

(3) 재활용제품의 소비촉진

공공기관, 특별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4) 건설폐기물을 지정부산물로 지정(법 제2조)한다.

「지정부산물」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중 토사(토석 포함),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를 재활용토록 규정한다.

(5) 건설폐재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범위를 규정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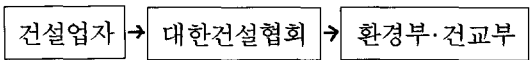
① 준수사항 규정: 환경부, 건교부 통합고시(제 94-1호, '94.1.7)

② 배출사업자 범위 등 기본방침 규정

- 연간 시공금액이 2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94년 : 196개사)는 중점관리대상자로, 통합고시(환경부·건교부)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업자도 동고시의 내용을 준수토록 노력해야 한다.

- 건축폐기물의 성상, 배출특성과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리·파쇄·선별 및 재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재활용품의 수요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4]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주요 내용(개정)

(환경부·건설교통부합 개정고시 환경부 제1995-126호, 건설교통부 제1995-367호 '95.11.17)

##### (1) 개정이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94.1.7 공동 고시한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설폐재의 재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 (2) 주요골자

###### ① 토사의 정의 재정립(제2조제2호)

공사현장내에서 절토·성토 등 토량 이동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토사도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키므로써 전체 재활용실적 중 토사의 발생 및 재활용량이 과대 계상되고 있어 이를 재활용량에 제외한다.

###### ② 재활용계획 및 실적제출 방법개선(제5조제4항)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서 당해년도 초에는 수주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곤란하므로 최초 계획제출(4월말)후 추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계획제출 시기(6, 9, 12월말)를 따로 정한다.

###### ③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조(제9조제1항)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며, 공사중에는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한다.

###### ④ 협회의 재활용권장(제9조의2 제1항)

협회 회장이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의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에게 재활용 목표율의 준수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게 한다.

###### ⑤ 재활용 실태점검(제11조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⑥ 건설폐재의 종류 및 재활용목표율을 정한다(제8조)

###### ⑦ 장부의 기록보존(제12조)

중점관리대상건설업자가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을 건설공사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게 하고 지도점검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⑧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에 대한 재활용 범위설정(별표1 비고)

(별표1)의 건설폐재 재활용용도(제7조관련)에 비고를 신설하여 성토용, 복구용에 대한 단순재활용범위를 명확히 한다.

### [3]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시책

1] 폐기물재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완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한다.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체계 확립

2] 재활용품 분리수거·처리체계 구축

[별표 1] 건설폐재의 종류 및 재활용 목표율

기 간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콘
시행일~ '95.12.31	30%	25%	10%
'96.1.1~'97.12.31	45%	35%	25%
'98.1.10이후	60%	50%	35%

재활용품 수거체계 일원화로 수거의 효율성 제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신속적 운용으로 폐자원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

### 3] 재활용품 수집·보관 및 재활용시설 확충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유통구조로의 개선

재활용 중점관리대상 8개업종 제품에 대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준수의무 부과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업종별 재활용촉진을 위한 생산·유통·재활용업자간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4] 재활용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반 확대

(1) 재활용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시설설치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2)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3/100) 및 폐자원 수집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10/100)

(3) 재활용산업의 부지확보지원

준농림지역내 재활용시설 입지허용 및 그린벨트내 지방자치단체 재활용품 집하장, 민간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입지허용한다.

(4)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 조성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토록 조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중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관련사항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시행규칙 제6조 관련)]

### [1]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1] 공통사항

(1) 건설폐기물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악취가 발생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임시)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을 처리시설에 하역한 후 돌아올 때에는 먼지가 발생하거나, 흩날리지 아니하



도록 운반장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시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톤
③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①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지의 규격: 가로 60cm이상·세로 40cm이상

③ 표지의 색깔: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 4] 처리의 경우

#### (1) 공통기준

① 건설폐기물은 가급적 건설현장에서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의 살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하기 어려운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불연성 폐기물은 가급적 중간처리하여 최종처리하여야 한다.

#### (2) 파쇄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 하기 전에 건설폐재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② 폐목재, 철근 등이 혼합되어 있거나, 어리 규모가 크거나 일정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파쇄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 (3) 소각기준 및 방법

① 건설폐기물중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은 가급적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소각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의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연장치의 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적정온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건설폐기물을 투입·소각하여야 한다.

#### (4) 매립기준 및 방법

①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가급적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토

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일반 토양성상과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폐기물 중간처리업자)

① 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 :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 4억 원 이상

② 시설 및 장비

- 1일처리용량 100톤 이상의 파쇄시설

- 분리·선별시설

- 시간당 소각능력 100kg 미만의 소각시설

- 바켓용량 0.6m<sup>3</sup> 이상의 굴삭기 1대 이상

- 보관시설 : 1일평균 처리량의 10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③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기사 2급·소음진동기사2급 또는 대기환경기사2급 1인 이상

## [2] 폐기물재생처리신고방법 등

(법 제44조의2 : 시행규칙 제46조)

건설폐기물(토사·폐벽돌,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한한다)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재생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 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제48조 관련)

(1) 시설

① 보관시설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별표4의 2.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다의 보관기준(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별 별표4의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 다의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

② 재생처리시설 : 선별·분리·분쇄·파쇄·절단·용융·용해·혼합·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소성·건조·주조·가열·냉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처리 하는 시설중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생처리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시설 1식 이상

(2) 장비

차량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 用役入札서류 寫本 제출

建設交通部는 입찰참가시마다 엄청난 부피의 관련서류를 매년 원본으로 제출토록 돼있는 현행 입찰제도가 시간 및 비용면에서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入札書類 簡系化 지침을 相關기관 및 단체에 시달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엔지니어링업체나 감리업체 또는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업체)가 公法 建設관련 용역입찰에 참가할 경우 우선 이미 떼어온 원본을 복사해 제출하고 나중에 落札社로 선정됐을 경우만 원본을 제출하면 되게 됐다.

그러나 원본내용에 참가 技術者나 用役수행 실적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원본을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현행 建設技術管理法 施行規則을 보면 용역업자 선정기준으로 참여건설기술자 및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원본을 입찰참가시마다 建設技術人協會 한국 엔지니어링협회·建設監理協會·大韓建築士協會 등 相關단체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